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11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김의겸 · 오세희 · 권향엽
허성무 · 윤건영 · 윤준병
임미애 · 조인철 · 강득구
김영호 · 김우영 · 박상혁
최민희 · 한민수 · 송재봉
황정하 · 이재강 · 이정현
전진숙 · 박선원 · 이광희
문진석 · 이용선 · 김영배
의원(24인)

제안이유

새만금은 현대차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추진 등 본격적 개발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물류·교통 체계, 지능형 첨단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등 혁신 기술의 실증과 자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새만금 개발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적 혜택을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새만금 권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

로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권역의 공동사무 수행을 위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고, 그린수소·스마트시티·첨단모빌리티 등 새만금 권역 특유의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재정특례를 부여하도록 함.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이익 공동 배분 등 새만금 권역의 특수한 행정·재정 수요는 「지방자치법」 일반규정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새만금 권역에 특화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스마트시티·첨단모빌리티·로봇·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특례와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새만금 권역의 발전이익이 인접지역으로 확산·공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및 자치권 보장 (제4조·제5조)
- 나. 수소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RE100 실현,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전력·용수 공급 기반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사무 처리 및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제7조 등).
- 다. 새만금 권역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자율주행차·드론 등

지능형 첨단모빌리티·로봇 실증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및 위탁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4조·제15조·제26조등 신설).

라. 새만금 신항만 등 조기개항 및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배정 및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근거 규정 (제27조 등)

마. 구성단체 간 발전이익 균형 배분과 상생협력을 위해 새만금상생공동펀드를 설치, 구성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 출연 근거와 독립회계 관리원칙을 규정하고 공동펀드를 「지방자치법」상 기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 성격 정비 (제17조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 권역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소경제·물류·교통 등 광역 공동사무를 전담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발전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및 새만금 권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란 이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구성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구성하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말한다.
3. “새만금 권역”이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지역과 인접 시·군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란 그린수소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의 생산·저장·운반·활용에 관한 인프라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권역 단위 에너지 체계를 말한다.

5.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이하 “공동펀드”라 한다)란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을 말한다.

6. “광역 인프라”란 2개 이상의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설치·운영되는 수소 공급 관로, 항만, 도로, 철도, 물류 시설 등을 말한다.

7. “새만금 스마트시티 권역”이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교통·물류·환경 등의 도시 서비스를 지능화한 구역을 말한다.

8. “지능형 첨단모빌리티·로봇 산업”이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무인 드론 및 물류·제조형 로봇 등 관련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말한다.

9.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란 새만금 권역 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고성능 컴퓨팅 및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는 시설이 집약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새만금 권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③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되,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2장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새만금 권역의 광역 행정수요 대응 및 공동사무 처리를 위하여 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한다.

②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으로 한다.

③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사무소 소재지는 규약으로 정한다.

④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구성단체 간 위계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다.

제5조(구성원 자치권 보장) ① 이 법에 따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 또는 자치권 제한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위임한 공동사무를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행정구역 및 자치권을 보유·행사한다.

③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 운영을 이유로 구성단체에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규약)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규약에는 「지방자치법」 제2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에 공동펀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공동사무)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담당하는 공동사무의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되,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생태계 구축, RE100 실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새만금 신항만·물류단지 연계 인프라 조성·관리 사무
3. 남북 3축 도로 등 광역 교통망 조기 완공 지원 사무
4. 새만금 권역 산업단지 연계 투자유치, 스마트시티 조성 및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육성 사무
5. 공동펀드의 관리·운용 사무
6. 권역 내 환경·생태 공동관리 사무
7. 지능형 첨단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의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8. 스마트 교통·물류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
9. 그 밖에 구성단체 간 협의로 정하는 광역 협력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8조(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의원정수는 규약에 따르고 구성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을 정할 때에는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④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9조(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회 장)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회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순번에 따라 맡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순번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로 정하며,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회 장은 자신의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내에서 재임하되,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재임 기간은 동일하게 한다.

③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대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의 궐위 시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대행을 둔다.

제10조(사무기구)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이 임명한다.

②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직원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 기간 동안 해당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현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이를 반영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별도 정원의 인정 기준 및 기준인건비 반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재정 지원

제11조(지방교부세 지원)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교부세 지원을 받는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운영을 위해

분담한 금액(자체재원 등을 말한다)의 결산액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산정 시 100분의 100을 반영한다.

③ 제2항의 반영 비율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출범일부터 적용하며, 그 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2조(특별교부세 지원)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구성된 해에는 구성단체당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②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구성된 다음 해부터 매년 10년간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대한 연간 특별교부세 지원액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수에 2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우선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지원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별도 계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고보조율 특례)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비율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가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보조율로 한다.

1.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운영 인프라 사업
2. 새만금 신항만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 사업
3. 남북 3축 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
4. 광역상수도·환경기초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 사업
5.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첨단모빌리티·로봇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의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완화)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시행하거나 구성단체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공동사무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소 공급 관로,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및
그린 데이터센터 전력·용수 공급 기반 구축 사업
2. 새만금 신항만 개항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사업
3. 남북 3축 도로 조기 완공 연계 사업
4. 그 밖에 새만금특별자치단체연합 출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인프라 사업

② 제1항 외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완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사업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방재정 투자심사 특례) ①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추진 상황을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반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제17조(공동펀드의 설치)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구성단체 간 발전이익의 균형 배분 및 상생 협력을 위하여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펀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설치하되, 독립된 회계로 관리한다.

제18조(공동펀드의 재원) ① 공동펀드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구성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금액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동펀드 운용 수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권역 내 기업 투자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수입의 일부를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연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 비율 및 시기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으로 정한다.

④ 공동펀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으로 보며, 지방재정법령의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공동펀드의 운용) ① 공동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내 투자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

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균형 지원

2. 광역 인프라 구축·유지·관리 비용 지원

3.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 복지·문화 증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업

② 공동펀드의 배분 기준 및 방법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동펀드 운용 결과를 연합의회에 보고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공동펀드 관리위원회) ① 공동펀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전문가 및 주민대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이 위촉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규약으로 정한다.

제6장 미래 신산업 및 혁신기술 생태계 구축 지원

제21조(그린수소생태계 구축 기본계획) ① 정부는 새만금 권역의 그린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수소 생산 목표 및 생산 플랜트 구축 계획
2. 수소 공급 관로 등 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
3. 군산·김제·부안 산업단지와의 수소 연계 계획
4. 수소 관련 인력 양성 및 산업 육성 계획
5. 자원 조달 방안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2조(수소 공급 관로 구축) ① 국가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에서 군산·김제·부안 산업단지 및 전주·완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소 공급 관로 구축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수소 공급 관로 구축 사업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한다.

③ 수소 공급 관로 구축에 따른 토지 수용·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3조(수소 관련 인·허가 통합처리)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관할 구역에서 그린수소 생산·저장·운반·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이하 이 조에서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에게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합 인·허가를 하였을 때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인·허가 통합처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통합처리의 기준·절차·효과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 인·허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3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그린 데이터센터 및 RE100 지원) 국가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관할 구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거래 특례를 지원하며, 글로벌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스마트시티 및 첨단 모빌리티 실증 특례) ① 국가는 새만금특

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신청하는 경우 새만금 권역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특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광역 로봇·모빌리티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제26조(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및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① 국가는 새만금 권역을 지능형 로봇의 글로벌 위탁생산 및 제조·보급 거점(이하 “로봇 파운드리 거점”이라 한다)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국내외 대기업 및 부품 제조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AI) 기반 다품종 소량 생산형 로봇 위탁제조 공장 및 공정 혁신 인프라 구축
2. 로봇 부품 공급망 국산화 및 관할 구역 내 중소·중견기업과의 제조 협력 생태계 조성
3. 로봇 파운드리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플랫폼 개발 및 기술 자산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및 제조 혁신을 위하여 연합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로봇 파운드리 거점 내에 제조 시설을 투자하는 기업 및 연계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장 물류·교통 인프라 지원

제27조(새만금 신항만 등 개발 지원) ① 국가는 새만금 신항만 등의 개항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새만금 신항만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 인프라, 항로 확충 및 스마트 물류 체계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새만금 신항만 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변경 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8조(광역 교통망 구축) ① 국가는 군산·김제·부안 및 인접 시·군을 30분 이내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남북 3축 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사업비를 우선 배정한다.

② 국가는 새만금 권역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하여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③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광역 대중교통 노선 운영·조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광역 교통 공동사무를 수행한다.

제29조(물류 인프라 연계 지원) ① 국가는 새만금 신항만과 철도·도로·수소 공급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체계를 구축을 지원한다.

②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관할 구역 내 물류단지 개발에 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장 투자 촉진 및 기업 지원

제30조(투자유치 지원)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새만금 권역 내 외국인 투자 및 국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자 지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관할 구역 내 투자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세제 지원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그린수소생태계 및 물류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관할 구역 내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장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운영 및 지원체계

제32조(국가의 지원 의무) ① 국가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안정적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출범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 ①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광역 정책 조정, 재정 지원 및 행정 협력을 담당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과 국가 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지원한다.

제34조(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청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과 새만금개발청은 연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성과 평가 및 공개)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은 매

년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5조(위임 규정) 이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준비위원회의 설치) 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군산시장, 김제시장 및 부안군수가 각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추진위원의 수는 동수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연합장이 선출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교부세 산정,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및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